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83

발의연월일: 2025. 4. 24.

발 의 자:한정애·박희승·이수진

송옥주 • 주철현 • 윤후덕

이병진 • 조인철 • 조정식

박수현 · 김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종업원소유제도는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윤공유와 참여경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을 말함. 이는 자본 소유의 편중 해소와 노동 소외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정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로서 우리사주제도는 현재 우리사주 지분율이 미미한 수준이고 보유기간도 단기에 그치는 등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미국, 영국과 달리 주주들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특별한 이익 동기가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CEO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 매각, 가족 승계 등이 주요 승계방안으로 거론되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함. 이는 고용유지, 참여를 통한 혁신, 불평등 완화,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주요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안 제89조제1항제6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
	우 해당 우리사주를 양도하
	여 발생하는 소득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